
「혁신성장펀드」 2023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FAQ

[혁신산업펀드, 성장지원펀드 공통]

2023. 5. 12.

**한국산업은행
한국성장금융
신한자산운용**

목 차

1. 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	1
2. 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	1
3. 개인의 LOC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	1
4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	2
5. 책임투자 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?	2
6.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?	3
7.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?	3
8. 병행펀드 설정 시,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?	3
9. Catch-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이 가능한지?	4
10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	4
11. 정부재원 활용 펀드(모태펀드)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? ..	4
12. 출자제한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?	5
13.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전·후방산업 투자도 포함되는지?	5
14.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코자 투자 받을시 주목적 인정 가능한지?	5
15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?	5
16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?	6
17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?	6
18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	7
19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	7
20.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?	7
21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	8
22. 1차 사업 선정 운용사가 2차 사업예정에 지원 가능한지?	8
23.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	8
24.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	8

Q1. 출자확약서(LOC)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

☐ 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

- 단, 접수일 이후 LOC를 발급 받는 경우 구술심사 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목적으로만 활용

Q2. 출자확약서(LOC)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

☐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되 각 출자기관 고유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

- 다만, 본건 출자사업 목적상 LOC 기재내용(기간, 투자대상, 투자 조건, 유효기간 등) 등이 적합한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
 - 특히, 출자확약서(LOC) 유효기간이 본건 출자사업 펀드 결성시까지 유효해야함

Q3. 개인의 출자확약서(LOC)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☐ 개인의 LOC는 운용사 소속인력에 한하여 인정

Q4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 양식에 전 직장 대표이사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?

- ☐ 투자관련 경력의 경우, 공고된 서식에 따라서 경력증빙 제출 필요
 - 대표이사 날인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날인으로 갈음 가능(심사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확인 가능해야 함)

- ☐ 투자 외 경력의 경우,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*를 제출

* 참여운용인력 경력사항 제출시 재직일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

Q5. 책임투자(ESG, 스튜어드십코드) 관련한 평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?

- ☐ 책임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운용사가 책임투자 도입현황 및 계획 등을 각 주관기관별 제출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 가능 (스튜어드십코드 참여현황 등도 포함)
 - 현재 책임투자 관련 내규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내규 및 제도 구축현황, 투자의사결정 체계 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재
 - 도입추진중 또는 향후 도입 계획의 경우, 도입계획, 실현방안, 일정 등을 기재

Q6.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?

- ☐ 펀드의 최종 약정총액(증액하는 경우, 증액금액 반영)을 의미하며, 병행펀드가 있는 경우 병행펀드의 약정총액까지 합산함

Q7.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?(공고문상 1안 기준)

☞ 최종 펀드 결성총액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

- 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

<관리보수율 적용 방식(예시)>

[약정총액 1,500억원 /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/ 투자잔액 200억원인 경우, ①, ② 합산]

- ① 1,000억원 중 200억원(투자잔액) 1.6% 이내, 나머지 800억원은 1.4% 이내
② 500억원은 0.9% 이내

* 1,300억원(약정총액-투자잔액) 중 1,000억원에 1.4% 적용, 300억원에 0.9%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

구 분*	≤1,000	≤2,000	≤3,000	3,000<
투자잔액	1.6% 이내	1.1% 이내	0.6% 이내	0.5% 이내
(약정총액-투자잔액)	1.4% 이내	0.9% 이내		

* 펀드성립일로부터 2년간 : 투자잔액 및 (약정총액-투자잔액) 기준 / 2년 ~ 존속기한 : 투자잔액기준

Q8. 병행펀드 설정 시,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?

- ☐ 병행펀드의 약정총액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함

Q9. Catch-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이 가능한지?

- ☐ Catch-up 방식 성과보수 제안은 '아래'의 성과보수 조건 범위 이내로서, 타 출자자 출자조건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, 제한적으로 가능 (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필수)

- 아 래 -

- 기준수익률 (Catch-up 선택시)
 - 내부수익률(IRR) 기준 9% 이상 제안 (혁신산업 일반/ 성장지원 일반 공통)
- 성과보수 조건 (Catch-up 선택시)
 - 기준수익률 초과시 총 누적이익의 20%, Catch-up 40% 이내

Q10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

- ☐ 불가능함
- 아울러, 병행펀드는 본 건 제안 펀드와 동일한 프로세스(동일 투자대상, 동일 비율, 회수 등)로 운용해야함

Q11. 정부재원 활용 펀드(모태펀드)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?

- ☐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모태펀드(운용사 : 한국벤처투자)와 공동출자 불가함

Q12. 당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자제한 1년을 받은 상황인데, 금번 지원과 관련하여 1년의 산정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?

- ☐ 주관기관의 제재사항(공고문 4.제재 사항 및 기타 항목)에 해당하는 운용사 판단기준일은 접수일(2023.5.17.(수)) 기준

Q13.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전·후방산업 투자도 포함되는지?

- ☐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위해 전·후방산업* 투자도 인정

* (전방산업)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
(도·소매, 단순 운송 등 제외)

(후방산업)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 핵심 기술·소재·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(단, 범용성 부품 제외)

- ☐ 자세한 사항은 KDB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(www.newgi.org)내 5월중 게시 예정인 “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” 참고 요망

Q14.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 주목적투자로 인정받는지?

- ☐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,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

Q15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?

- ☐ 대상 :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전체

- ☐ 주기 : 반기별 평가

Q16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?

- ☐ 최근년도 기준 감사보고서(또는 가결산보고서) 장부가액으로 기재
* 최근년도 감사보고서(또는 가결산보고서)에 반영되지 않은 공정가치 금액은 미인정

Q17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?

- ☐ 각 펀드 감사보고서 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치 반영

비상장기업 (가)기업을 2개의 펀드(A펀드, B펀드)에서 투자 후 A펀드는 원가법으로, B펀드는 공정가치 평가값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

- A펀드 : 취득원가 10억원, B펀드 : 공정가치 15억원

⇒ A펀드 10억원, B펀드 15억원으로 기재

Q18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

☐ 본 사업은 10년 이내의 장기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출자목적 이해도, 장기적인 출자능력 등을 보유한 자가 출자 가능함

○ 국내 기관투자자, 법인이 원칙이며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*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은 주관기관 앞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능

* 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이 특정금전신탁 등의 방식을 통해 우회 출자 불가

○ 해외출자자는 아래 서류 구비 필요 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)

- 출자자의 사업자 등록증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출자자의 인감증명서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이사회 등 LOC 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
(단순 출자여부 뿐만 아니라, 주목적 투자를 비롯한 주요 펀드결성조건, 국내법에 근거한 펀드 출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- 대표이사 여권사본(기타 신원 증빙이 가능한 서류)
- 최근년도 연차보고서 등 출자자(회사)개요 자료, 최근 3개년 외부감사받은 감사보고서
- 기타 출자자 및 출자여부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상기 자료들은 국문으로 번역 및 공증 필요하며, 추가 확인자료 요청 가능

Q19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

☐ 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출 방식 펀드 운용은 허용하지 않음

Q20.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?

☐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따라 투자 가능함

○ 단, 주관기관별로 펀드의 중복투자 현황 모니터링 예정

Q21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

☐ 사전 협의시 제한적으로 가능함

- 혁신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정책기관 등이 요청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 추가 가능하며, 주관 기관 앞 사전협의 필수

Q22. '23년 1차 사업 선정 운용사가 '23년 2차 사업(예정)에 지원 가능한지?

☐ '23년 1차 출자사업 일반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인 '23년 2차 사업 매칭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

Q23.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

☐ 공동 운용사 전체 기준으로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, 현장실사시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(엑셀양식 4.2)

Q24.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

☐ SPC 기준이 아닌, 투자기업 기준으로 작성하고, 기타사항 셀에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한 투자임을 기재 (엑셀양식 2.6, 3.2)

- 아울러, 하나의 SPC에 복수의 펀드 등이 출자하고,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한 경우, 전체 금액이 아닌 제안사 작성 대상 펀드 (운용인력) 기준으로 기재